

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3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4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0. 28.(제87회사하구의회의임시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교통행정과장 정 석 환)

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주차장 이용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대주민편의와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

- 가. 주차장이용 제한사유중 종전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함(안 제4조)
- 나.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중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한 불평등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(안 제10조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주차장이용 제한시간을 위반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제한과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미리징수등 우리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각종생활민원중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규제조항을 과감히 발본색원,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대민편의를 제고하고
- 지금까지의 잘못적용된 각종법령과 제도, 관행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행정규제 개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